

韓國의 貿易政策과 產業保護構造

南 宗 鉉

▷ 目 次 ◁

- I. 序 言
- II. 產業誘因策의 經濟的 意義
- III. 韓國의 產業 및 貿易政策과 實質實效換率
- IV. 產業別 潛在 및 實效保護構造推定
- V. 結論과 要約

I. 序 言

韓國經濟는 1960年代 初期以後 4次(1962~81)에 걸쳐 經濟開發5個年計劃을樹立한 바 있으며, 各 計劃에서 設定된 目標를 成功의 으로 達成하기 위하여 政府는 複雜多樣한 產業誘因政策을 그 主要手段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現行 產業誘因體制는 매우 복잡한 構造的 特徵을 갖게 되었는데, 예를 들

면 그동안 몇차례에 걸친 貿易自由化的 試圖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輸入代替產業은 아직도 各種 輸入規制에 의해서 상당히 높은 保護를 받고 있으며, 또한 輸出產業은 모든 投入物에 대한 關稅還給의 惠澤은 물론 그밖에 輸出金融, 租稅減免等 諸惠澤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政府는 우리나라 產業의 比較優位地位과 國際貿易環境의 급격한 변화를 意識하고 이에 대한 對應措置로서 소위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한 產業構造改編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하여 各種 支援策을 그 主要內容으로 한 產業別特別育成法을 制定·施行하는 한편 投資財源의 調達 및 이의 配分에까지 적극적으로介入하게 되었다¹⁾.

이와 같은 政府의 적극적인介入은 그동안 貿易의 擴大, 특히 製造業生產品을 主種으로 한 輸出增大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여 왔으며, 또한 個別誘因策은 원래의 각기 目的 하였던 바를 比較的 짧은 시간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貢獻하여 왔다는 것은否

筆者：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1) 解放後 韓國의 產業 및 貿易政策에 대한 主要研究로는 Frank, Kim and Westphal(1975), Hong(1979), and Krueger(1979) 등을 참조.

認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와 같은 政府의 적극적인介入은 그동안 價格體制를 歪曲시킴으로써 經濟的 福祉損失을 招來하였고, 市場機能을 相對的으로 弱化시킴으로써 效率的인 資源配分을 沮害하여 왔으며, 또한 個別誘因策은 각각 다른 時期에 각각 다른 目的下에서 制定된 것이기 때문에 全體的인 側面에서 볼 때 均衡과 調和가 缺如되게 되었다. 특히 重化學工業에 대한 投資와 輸出促進을 위하여 사용된 政策金融은 최근 政府의 合理的인 金融 및 安定化政策의 施行에도 中요한 障碍要因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向後 우리나라가 效率的인 產業構造를 構築하고 開放經濟體制를 통한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現在와 같은 지극히 복잡하고 非效率的으로 亂立해 있는 產業誘因體制의 合理化가 가장 時急한 課題라고 하겠다. 本研究는 이에 對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現行 產業誘因體制가 產業別 保護構造에 미치는 影響을 計量的으로 分析·評價함으로써 向後 이의 合理化를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하려는 데 그 主目的을 두었다.

本稿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Ⅱ節에서는 產業誘因政策의 經濟的 意義를 간단히 檢討하고 있으며, Ⅲ節에서는 1954~78年 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용되어 온 產業 및 貿易政策을 간단히 考察하는 한편, 輸入代替產業의 保護政策 및 輸出產業에 대한 諸支援政

策을 考慮한 實質實效換率을 推計함으로써 貿易可能產業의 國際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推移를 把握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Ⅳ節에서는 1978年度 現在 우리나라의 產業別潛在 및 實效保護率을 計測하고 그 결과를 1968年度 計測值와 對比·分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產業間 保護構造의 弊端과 이의 時間的變化樣相을 分析·評價하고 있다. 끝으로 Ⅴ節에서는 本研究의 결과를 요약해서 提示하고 있다.

II. 產業誘因策의 經濟的 意義

한 나라의 經濟開發過程에서 產業誘因 및 支援政策의 諸要性에 대해서는 이미 脊은 經濟學者들에 의해서 論議가 되어 왔지만 아직 확실한 結論에 到達하지는 못하였다. 한편으로는, 輸入代替產業의 保護나 輸出產業에 대한 支援等 傳統的인 貿易政策에 의한 產業誘因政策은 必然的으로 資源의 非效率的인 配分과 經濟的 福祉損失을 招來하므로 될 수 있는 한 이를 反对해야 한다는 主張이 있는가 하면²⁾,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政策的 支援은 한 나라의 經濟가 전혀 다른 次元의 產業構造(전혀過去에 經驗이 없는)로 轉換하는 過程에서 必須의인 習得效果를 提供할 뿐만 아니라 어떤 주어진 社會的 意識構造와 歷史的 傳統 및 慣習下에서는 소위 X-效率性(X-efficiency)을 提高시키는 心理的 效果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靜態的 資源配分의 效率性側面에서 評價하기보다는 좀더 動態的인 側面에서 經濟社會開發에 포괄적으로 미친貢獻 을

2) Bruno(1970), Little, Scitovsky, and Scott(1970), Balassa and Associates(1971), 그리고 Krueger(1966) 등을 참조. 특히 Bhagwati and Krueger(1973)는 輸出產業支援政策은 輸入代替產業의 保護育成政策에 비하여 不作用(negative effects)이 相對的으로 적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實證 및 理論的理由를 提示하고 있다.

評價對象으로 삼아야 한다는 측도 있는 것이다³⁾. 따라서 이와 같은 產業誘因政策에 따르는 諸經濟的 便益이나 損失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확히 評價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같은 目的을 達成하는 데 있어서 政府의 介入方法에 따른 相對的인 效率性을 비교한다든가, 또는 어떤 理想的인 假定下에서 各 支援策에 의해서 蒼起되는 經濟的 福祉損失을 評價하는 등에 대하여는 이미 理論 및 實證的 研究가 상당히 進行되어 있다⁴⁾.

즉, 傳統的인 經濟理論에 의하면 어떤 經濟活動에 대한 政府의 介入은 그 經濟活動으로 인하여 外部經濟(便益 혹은 損失)가 發生하고 또 그 經濟活動主體가 그 外部經濟(externalities)를 内部化(internalize)하지 못할 때, 즉 순수한 의미에서의 市場形成不能(market failures)이 存在할 때 그 介入妥當性이 인정되며, 그때에 政府는 바로 그 外部經濟가 發生하는 곳에서 그것을 補充(便益은 補償하고 損失은 課稅)해 주도록 介入함으로써 社會的 經濟福祉를 極大化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겠다⁵⁾. 이러한 外部經濟는 주로 產業情報의 蒱集, 海外市場의 開拓, 技術人力의 訓練, 研究開發活動, 規模의 經濟,

그리고 相互關聯產業의 均衡된 成長 등에서 發生하며, 또한 幼稚產業의 保護에 대한 主張도 이와 같은 外部經濟에 그 根幹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政府介入은 결코 企業이나 產業의 貿易形態(輸入代替, 輸出, 혹은 內需產業), 產業別 区分(輕工業이나 重工業), 그리고 企業의 規模(大企業이나 中小企業) 등의 條件에 따라 差別待遇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外部經濟效果를 反映하는 次元에서 모든 產業에 中立的으로 適用되어야 할 것이다⁶⁾. 즉 貿易政策을 통한 特定產業에 대한 支援은 一般的으로 外部經濟效果를 정확히 反映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幼稚產業의 保護라는 側面에서 볼 때에도 貿易形態에 따라 같은 幼稚產業에 대해서 差別待遇를 하는 것이 되므로 最善의 產業支援策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自明한 일이라고 하겠다.

또한 여기서 指摘해야 할 것은 한 나라의 產業支援 혹은 保護構造가 소위 그 나라에 比較優位가 있는 產業에 상대적으로 有利하도록 調整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⁷⁾. 즉 어떤 產業이 한 時點에서 比較優位가 있는 產業이라거나 또는 가까운 將來에 比較優位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 나라에서 投資優先順位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決定要因이 되는 것이지 결코 他產業에 비하여 어떤 特別한 政府補助나 支援을 필요로 하는 理由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經濟成長에 따른 生產要素의 相對價格의 변화는 自動的으로 그 나라에 比較優位가 있는 產業에 대한 投資選好를 保障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論議된 政府介入에 대한 一般論의 主張은 市場形成不能(market failures)의 경우

3) Chenery and Carter(1973), Diaz-Alejandro(1975), 그리고 Corden(1970) 등을 참조.

4) Bhagwati(1968), Krueger(1974, 1978), Magee(1972) 그리고 Balassa(1971) 등을 참조.

5) 이 部門에 대한 理論的 分析으로는 Bhagwati(1968), Johnson(1970), 그리고 Baldwin(1969) 등을 참조.

6) 또한 政府介入은豫見치 않는 일시적 突發事態로 인하여 발생하는 生產活動에 대한 衝擊과 危險負擔을 緩和해 주는 일종의 保險의 役割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7) 先進國에서는 반대로 產業支援이 斜陽產業쪽으로 偏倚되어 있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주로 政治經濟的理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외에 生產要素 및 生產品의 市場은 完全競爭的이라는 假定을 計으로 하며, 만약에 非競爭的 要因이 存在하여 最適產業成長을 沮害하는 要因으로 作用할 때는 언제든지 政府의 적절한 介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開發途上國에서는 혼히 產業 및 貿易政策에 의한 誘因策 自體가 競爭制限的 要因을 內包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것은 다시 이를 是正하기 위한 수많은 政府政策과 介入을 誘發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⁸⁾.

結論的으로 말해서 產業誘因策은 國家安保 등과 같은 特別한 經濟外的 目的이 없는 한 어디까지나 市場形成不能(market failures)과 不完全競爭(imperfect competition) 등 最適產業成長을 沮害하는 要因들을 識別하고 이를 補完 혹은 除去시켜 줌으로써 可用資源의 效率的 活用을 위한 基本環境을 提供해 주는 데 그 經濟的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長率 4.2%에 비하여 1968~78年間에는 10%以上的 實質GNP成長을 記錄함으로써 世界的 인 關心을 끌었다(表 1 참조). 經濟政策面에 있어서도 1960年 以前에는 輸入代替를 위한 輸入規制 以外에는 特別한 開發政策이 없었던 데 비해 1960年代에는 5個年經濟開發計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政策變化가 있었다. 그중 特記할 것은 우선 1962年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그후 계속된 經濟開發5個年計劃을 들 수 있는데 各計劃에서는 重要產業育成, 產業構造近代化와 社會間接資本의 원활한 供給 등이 重要視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政策轉換은 1964年과 1965年の 金融과 換率制度의 改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⁹⁾. 이와 거의 동시에 推進된 重要政策으로는 輸出支援制度의 強化, 漸進의 輸入自由化, 그리고 國內投資需要를 充足시켜 주기 위한 外資導入의 積極的인 推進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1960年代 中盤에 本格化된 對外指向的 成長政策은 韓國에 比較優位가 있었던 勞動集約的 輕工業分野의 急成長과 輸出增大를 可能케 하였고, 輸出增大는 國際分業을 통한 經濟的 利益은 물론 國內雇傭增大라는 두 가지 效果를 동시에 實現시켰던 것이다. 즉, <表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GNP에 대한 總輸出額(서비스部門 포함)의 比率은 1960年 및 1964年에는 각각 2.7% 및 4.4%였으나, 그후 계속 增加하여 1978年에는 무려 41.8%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60年에 工產品의 總輸出額 比重은 18.1%에 不過했으나 1978年에는 87.9%를 占有하게 되었다.

그러나 韓國經濟는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對內的으로는 資本蓄積의 深化와 雇傭率의 增加로 賃金이 급격히 上昇하게 되었으며, 對外

III. 韓國의 產業 및 貿易政策과 實質實効換率

1. 產業 및 貿易政策 : 1954~78

韓國은 1954~63年間의 年平均 實質 GNP成

8) 예를 들면 低金利政策등 資本市場(capital market)에 대한 政府의 介入은 資金配給(credit rationing)制度의 導入을 필요로 하며 높은 輸入障壁에 의한 國內市場에 대한 保護는 獨寡占體制를 許容케 함으로써 이에 대한 價格規制는 물론 이를 素材로 사용하는 產業의 保護를 필요케 하는 것이다.

9) 政府는 1964年 5月에 換率을 美貨「달러」當 130원에서 255원으로 平價切下했고, 1965年 9月에는 一般貸出金利를 年利 16%에서 26%로 引上했다.

의으로는 輕工業製品에 대한 輸入規制가 強化되고 있어 產業構造改編의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으며, 政府는 重化學工業育成을 強調하기 시작했다. 實은, 政府는 이미 第2次經濟開發計劃期間(1967~71)에 重化學工業育成法을 導入하기 시작하였으며, 1973年에는 政府內에 重化學工業推進委員會를 設置해서 주로 政府後援에 의해서 推進되고 있는 投資事業에 대한 行政的 支援을 擔當케 하였다. 그러나 重化學工業에 대한 本格的 支援育成은 第4次5個年計劃期間(1977~81)에 주로 實現되었다.

그런데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한 產業構造改編의 成功與否는 여러가지 要因에 의해서支配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 國際競爭力を 결정하는 最新의 生產技術 및 技術人力의 確

保問題, 輸出과 관련된 不確實性, 保護貿易主義의 撞頭 可能性, 그리고 菲요한 原料의 確保問題 등은 중요한 要因으로 指摘될 수 있다. 만약에 새로이 開發되는 重化學工業이 國際競爭力を 獲得하는 데 失敗할 경우 韓國은 對外指向的 開發政策에서 어느 程度 後退를 強要받게 될 虧慮가 있으므로, 產業構造改編을 위한合理的인 產業政策의樹立은 매우 중요한課題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誘因策의 構造와 實效換率推計

가. 輸出誘因策

政府는 1960年代 初期 以後 一連의 輸出誘因制度를 導入함으로써 既存 輸出誘因策을 強

〈表 1〉 主要經濟指標, 1954~78
(1975年不變價格)

	1954	1960	1964	1968	1972	1976	1978
1. GNP(10億원)	2,318.5	2,845.6	3,671.5	5,195.6	7,365.6	11,275.5	13,877.1
2. 人口(百萬名)	20.8	25.0	28.0	30.8	33.5	35.9	37.0 ¹⁾
3. 1人當GNP(1,000원)	111.4	114.1	131.2	168.5	219.8	314.4	374.9
4. 產業別GNP構成比(%)							
1次產業	50.2	44.3	45.9	34.2	27.8	24.0	19.1
製造業	5.3	8.4	9.7	15.0	20.9	28.2	31.6
社會間接資本	44.5	47.3	44.4	50.8	51.3	47.8	49.3
5. 對GNP輸出比率(%)	1.3	2.7	4.4	11.2	21.3	34.9	41.8
6. 對GNP輸入比率(%)	10.3	12.3	11.1	25.9	30.6	40.6	52.8
7. 年平均成長率(%)	1954~1963		1964~1978		1966~1973		1974~1978
GNP	4.2		10.0		10.2		10.4
1人當GNP	1.1		7.8		7.9		8.7
製造業의 附加價值	11.3		19.6		21.2		17.2
製造業에서의 實質賃金	0.2 ²⁾		13.5		17.5		12.9
GNP「디플레이터」	16.8		16.5		14.5		21.8
都賣物價指數	21.2		14.4		7.8		20.3
輸出	13.0		29.1		35.4		19.9
輸入	7.3		22.9		28.1		19.3

註: 1) 推定值.

2) 1958~63年 期間의 年平均 成長率.

資料: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71, 1979.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75, 1979.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79.

化시키는 한편, 制限된 範圍內에서 이긴 하지 만 輸入規制를 점차 緩和시켜 왔다. 本項에서는 1960年 初期以來 施行되어 온 중요한 輸出誘因制度 및 그 變遷過程을 살펴보고 1966 ~78年 동안 그 主要誘因策들이 實質實效換率에 미친 影響을 計測하고자 한다.

먼저 1960年代에 導入・施行된 主要輸出誘因策을 살펴보면 :

- 1) 輸出用 原資材와 輸出產業의 資本財輸入에 대한 關稅減免制度
- 2) 輸出品과 그 投入物에 대한 內國間接稅減免制度
- 3) 輸出所得에 대한 直接稅減免 및 加速減價償却制度¹⁰⁾
- 4) 輸出活動과 關聯한 優待金融制度
- 5) 輸出用原資材 輸入에 대한 減耗許用制度
- 6) 輸出入「링크」制度
- 7) 輸出產業에 대한 電氣料 및 鐵道運賃割引 등이 있다.

또한 1965年부터는 이와 같은 輸出誘因策이 輸出商品生產에 사용되는 中間財 生產業者에게 擴大適用되었다.

그런데, 上記 誘因制度中 輸出商品과 그 投入物에 適用된 間接稅 減免과 關稅減免은 國內市場을 目標로 한 生產에 비해 相對的으로 製造費用을 輕減시켜준다는 점에서는 補助의 性格을 認定할 수 있지만, 엄밀한 意味에서

볼 때 그것은 自由貿易下에서의 生產・販賣活動을 許容한 것일 뿐 純粹補助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直接稅減免, 優待金融, 加速減價償却, 減耗許容, 그리고 輸出入「링크」制度와 公共料金割引에 의한 補助는 純粹補助라고 할 수 있다.

上記 誘因制度들은 1970年代 初期까지도 큰 變動은 없었으나 1973年에 輸出所得에 대한 法人稅 및 個人事業所得稅의 50% 減免制度를 廢止하였다. 그러나 各種 損金算入制度는 계속 維持되었다. 또한 1975年 7月에는 關稅減免制度를 關稅還給制度로 轉換하였으며 1976年에는 電氣料割引이 廢止되었다. 그리고 減耗許容量도 漸減되어 最近엔 一部를 除外하고는 거의 實際減耗量에 接近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政府는 持續的인 輸出成長을 促進하기 위하여 1968年에는 輸出保險을 制定・公布하였고 1976年 7月에n 中長期 延拂輸出金融의 擴大를 위해 韓國輸出入銀行을 設立했다. 또한 政府는 輸出產業에 대한 各種의 優待金融을 꾸준히 增加시켜 왔다. 그 融資實績을 보면 輸出產業에 대한 短期優待金融은 1966年 48億원에서 1978年에는 8,835億원으로 增加하였고 長期優待金融은 同期間에 12億원에서 7,762億원으로 크게 增大되었다. 그 결과, 民間與信總額에 대한 輸出金融融資額의 比重은 1966年 5.1%에서 1978年에는 20.5%로 上昇하였다¹¹⁾.

<表 2>는 앞에서 言及한 主要誘因策에 의해서 發生한 補助를 總體的으로 計量化한 것이다. 輸出에 대한 名目實效換率은 公正換率에 輸出美貨「달러」當 補助額을 加算하여 구하였고 實質實效換率은 名目保護率을 購買力「파리티」指數로 調整하여 推定했다(表 2 참조).

10) 1962~73年동안 輸出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50% 減免되었다. 한편 Hong(1979)의 推定에 의하면 全收益에 대한 輸出活動收益이 50% 以上인 경우에 加速償却은 正常償却의 30%, 그리고 20~50%인 경우에는 15%에 달했다.

11) 輸出產業에 대한 優待金融의 金利는 融資實績으로 加重平均한 결과 1966年에 7.7%, 1978年에 10.6%인 반面, 一般貸出金利는 1966年에 26.4%, 1978年에 19.0%이었다.

〈表 2〉 輸出에 대한 名目 與 實物換率, 1966~78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A. 公正換率(원/弗)	270.3	268.3	276.3	288.4	310.4	350.1	394.0	398.5	406.0	484.0	484.0	484.0	484.0
B. 輸出補助(원/弗)	4.1	7.8	13.8	14.1	16.6	18.9	12.6	8.6	7.2	10.1	12.3	9.4	11.0
1. 利子補助	2.3	5.2	3.2	3.9	3.6	5.1	2.0	1.4	—	—	—	—	—
2. 直接稅減免	17.8	18.9	21.2	29.0	28.5	34.1	27.2	21.3	22.8	33.3	36.1	65.9	42.7
3. 間接稅減免	21.3	25.7	42.3	36.2	42.6	50.9	68.5	65.4	55.8	33.8	35.9	30.6	30.0
4. 關稅免除	315.8	325.9	356.9	371.7	401.8	459.1	504.3	495.1	491.9	561.2	568.4	589.9	567.6
C. 名目實效換率	276.7	281.3	293.3	306.4	330.7	374.1	408.6	408.5	413.2	494.1	496.3	493.4	495.0
D. 都賣物價指數와 「쾨리티」指數 (1975=100)	31.3	33.4	36.2	38.5	42.0	45.7	52.0	55.6	79.0	100.0	112.1	122.2	136.5
1. 韓國의 都賣物價指數	53.6	54.1	56.0	57.9	59.2	68.2	72.4	81.6	95.1	100.0	105.5	114.9	131.4
2. 主要國의 都賣物價指數 ¹⁾	171.4	162.1	154.6	150.3	140.9	149.3	139.2	146.8	120.4	100.0	94.1	94.0	96.3
3. 購買力「쾨리티」指數 ²⁾	463.3	434.9	427.2	433.5	437.4	522.7	584.4	585.0	488.8	484.0	455.4	455.0	466.1
E. 實質換率(A×D ₃)(원)	541.3	528.3	551.8	558.7	566.1	685.4	702.0	726.8	592.2	561.2	534.9	554.5	546.6
F. 購買力調整換率(원)	474.3	456.0	453.4	460.5	466.0	558.5	568.8	599.7	497.5	494.1	467.0	463.8	476.7

註: 1) 美國과 日本; 韓國의 輸出額比重을 加重值豆 사용(日本物價指數는 「בלתי」基準으로 換算 사용함).

2) 主要國의 都賣物價指數/韓國의 都賣物價指數
資料: 韓國銀行 및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그런데 補助額 推定과 關聯하여 指摘하여야 할 것은: 첫째, 減耗許容, 輸出入「링크」制度 와 電氣料 및 鐵道運賃割引 등으로 발생하는 補助額은 資料가 부족하거나 數量의in 면에서 相對的으로 微小할 것으로 판단되어 計量過程에서 除外되었다. 둘째, 利子補助額은 每年 融資의 年末殘額에 優待金利와 一般貸出金利間의 차를 乘算하여 推定하였는데 韓國에서는 一般貸出金利 역시 自由市場金利를 複數下廻하기 때문에 利子補助額은 상당히 過小推定되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前述한 바와 같이 關稅와 間接稅 減免은 엄격한 意味에서 純粹補助라고 할 수 없으므로, <表 2>에서는 그 補助額을 포함한 경우를 粗實效換率,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純實效換率로 각각 分離해서 提示하고 있다.

純實質實效換率의 推移를 보면, 1966年 474 원에서 漸增하여 1973年에는 600원으로 最高水準에 달하였으며 그후 계속 下落하여 1978年에는 477원으로 거의 最下水準이 되었다. 이와 같은 實質實效換率의 변화는 輸出競爭力에도 크게 影響을 미친 것으로 判断되며, 이것은 1966~73年 동안 輸出增加率은 35.4%이었던 데 비해 1974~78年동안의 輸出增加率은 19.9%로 鈍化된 것과 聯關係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73年 以後 輸出增加率의 鈍化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느 程度가 1973年「오일 쇼크」에 따른 世界的 不況에 의한 것이며, 어느 程度가 實質實效換率의 下落에 의한 것인지를 区別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輸入代替에 대한 誘因策

지금까지 輸出에 대한 誘因策에 대해서 檢討해 보았는데 輸出에 대한 誘因策과 輸入代

替에 대한 誘因策을 비교하기 위해서 本項에서는 輸入代替에 대한 誘因策을 살펴보자 한다.

韓國에서는 奢侈性品目 등의 一部에 대해서 輸入禁止의 關稅를 賦課하는 등 상당히 높은 法定關稅率을 策定하는 한편 많은 輸入商品에 대해서 關稅減免惠澤을 주고 있다. <表 3>은 關稅徵收額과 減免額, 그와 關聯된 法定 및 實績關稅率과 輸入에 대한 實效換率을 推定한 것이다. 그結果에 의하면 1966~78年間 年平均 法定稅率은 20.4%인데 비해 實績關稅率은 7.3%에 不過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4年以來 法定關稅率이 下落趨勢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實績關稅는 오히려 上昇趨勢를 보여주고 있어 法定關稅率의 下落과 實質의 輸入自由化와는 거의 無關함을 示唆해 주고 있다.

<表 3>에서 輸入에 대한 名目實效換率은 公定換率에 輸入美貨「달러」當 實績關稅를 더하여 구하였다고 實質實效換率은 輸出과 마찬가지로 購買力「페리티」指數로 調整하여 推定했는데 實質實效換率의 推移는 1966年 493원에서 1969年 446원으로 일단 下落되다가 1973年에는 613원으로 最高에 이른 후 다시 계속 下落하여 1978年에는 534원을 記錄하였다. 그러나 여기서의 輸入代替에 대한 實質實效換率을 輸出에 대한 實質實效換率과 同一한 意味로 解析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韓國에서는 輸入代替產業의 保護措置로서 關稅政策보다 非關稅政策이 複數 중요한 役割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量的 規制의 性格을 띤 非關稅政策의 貿易規制方式은 輸入自由화의 一環으로 1976年에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으

〈表 3〉 輸入에 대한 名目 및 實質換率, 1966~78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A. 公正換率(원/弗)	270.3	268.3	276.3	288.4	310.4	350.1	394.0	398.5	406.0	484.0	484.0	484.0	484.0
B. 徵收關稅와 免除關稅													
1. 徵收關稅	18.0	25.4	37.9	44.7	50.9	52.2	59.1	82.4	126.7	181.0	275.5	385.9	642.2
2. 免除關稅	20.3	32.3	66.4	86.2	107.1	143.6	214.5	319.6	302.8	222.7	329.8	413.2	554.2
3. 總法定關稅(B ₁ +B ₂)	38.3	57.7	104.3	130.9	158.0	195.8	273.6	402.0	329.5	403.7	605.3	799.1	1,196.4
4. 總輸入(c.i.f.) (百萬弗) ¹⁾	716.4	996.2	1,462.9	1,823.6	1,984.0	2,394.3	2,522.0	4,240.3	6,851.8	7,274.4	8,773.6	10,810.5	14,971.9
5. 總輸入(10億원) ¹⁾	193.6	267.3	404.2	471.2	615.8	838.2	993.7	1,689.8	2,781.8	3,520.8	4,246.4	5,232.3	7,246.4
C. 輸入弗當實質關稅와 法定關稅													
1. 實質關稅(B ₁ /B ₃)(원)	25.1	25.5	24.5	25.7	21.8	23.4	19.4	18.5	24.9	31.4	35.7	42.9	
2. 法定關稅(B ₃ /B ₄)(원)	53.5	58.0	71.0	71.8	79.6	81.5	108.5	94.8	62.7	55.5	69.0	73.9	79.9
D. 名目實質換率(A+C ₁)	293.4	293.8	302.2	312.9	336.1	371.9	417.4	417.9	424.5	508.9	515.4	519.7	526.9
E. 關稅率(%)													
1. 實績關稅率(C ₁ /B ₅)	9.3	9.5	9.4	8.5	8.3	6.2	5.9	4.9	4.6	5.1	6.5	7.4	8.9
2. 法定關稅率(C ₂ /B ₅)	19.8	21.6	25.8	24.9	25.7	23.3	27.5	23.8	15.4	11.5	14.3	15.3	16.5
F. 都賣物價指數와 「체리티」指數 (1975=100)													
1. 韓國의 都賣物價指數	31.3	33.4	36.2	38.5	42.0	45.7	52.0	55.6	79.0	100.0	112.1	122.2	136.5
2. 主要國의 都賣物價指數 ²⁾	52.3	52.5	53.4	54.9	57.0	62.9	68.4	81.6	96.0	100.0	105.9	116.1	138.4
3. 購買力「체리티」指數 ³⁾	167.0	157.1	147.6	142.6	135.7	137.6	131.5	146.7	121.5	100.0	94.5	95.0	101.4
G. 實質換率((A×F ₃)	451.4	421.5	407.8	411.3	421.2	481.7	518.1	584.6	493.3	484.0	457.4	459.8	490.8
H. 輸入에 대한 實質質換率 (D×F ₃)	493.3	461.6	446.0	446.2	456.1	511.7	548.9	613.1	515.8	508.9	487.1	493.7	543.3

註: 1) 이推定值는 輸入價格에公正換率을 곱한 것.^[1]

2) 美國의 日本·韓國의 輸入量을加重值로 사용(日本物價指數는 「달러」基準으로換算 사용함).

3) 主要國의 都賣價格指數/韓國의 都賣價格指數.

資料: 韓國銀行, 關稅廳.

로 轉換되었다. 政府는 매년 두번씩 輸出入期別公告에 의해서 輸入規制品目을 公告하는 데,一般的으로 그 對象은 輸入의 必要性, 貿易收支狀況 및 國內產業保護 등의 與件을勘案하여 選定된다. 따라서 輸入制限品目은 大部分 輸入競爭品目과 奢侈品이 主宗을 이룬 반面, 原資材와 非競爭 輸入品目은 自動承認品目으로 구분되는 것이 보통이다.

<表 4>는 1967~78年間 適用된 數量制限에 의한 輸入規制推移를 提示한 것이다. 「네가티브 시스템」이 채택된 1967年 下半期에는 國際標準貿易分類(SITC) 細分類(4-digit)基準 1, 312個 品目中 118個 品目이 輸入禁止로, 그리고 402個 品目이 「쿼터」나 商工部 및 其他 關

聯部處의 추천에 의한 輸入制限品目으로 公告되었으며 約 60%의 品目이 自動承認品目으로 分類되었다. 그후 輸入禁止品目은 계속 減少하여 왔으며 1978年 5月 輸入自由化 1段階措置를 기해 완전히 없어진 反面, 輸入制限品目은 1967年 下半期 402個에서 1975年 602個로 增加되었으나 그후 다시 減少하여 1978年 9月 輸入自由化 2段階措置 때는 385個로 대폭 減少하였다. 그 결과, 1978年 末에는 自動承認品目이 約 65%로 提高되었다.

한편, 關稅와 類似한 效果를 가진 輸入規制方法으로 1961年 以來 施行되어 온 輸入擔保金預置制가 있다. 預置率은 對象品目的 輸入規制의 必要性에 따라 多樣하다. 예를 들면 1968年에는 奢侈品에 대해서 150%, 一般品目 100%, 그리고 輸出用 原資材에는 30%가 適用되었다. 그러나 本制度는 1978年에 와서는 奢侈品에 대해서 40%를 適用하는 以外에 모두 廢止되었다.

結論的으로 韓國에서 非關稅 貿易制限政策은 輸入代替產業保護에 있어서 중요한 役割을 해온 것으로 보이며, 이와 關聯하여 좀더 具體的이고 정확한 保護度를 測定하기 위해서는 關稅 및 非關稅 障壁은 물론 國內·國際價格比較에 대한 情報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節에서 논하고자 한다.

IV. 產業別 潛在 및 實效保護構造 推定

<表 4> 韓國의 非關稅 輸入制限, 1967~78

	禁 止	制 限	自 動 承 認	總 計	輸 入 自 由 化 率
1967 下	118	402	792	1,312	60.4
1968 上 下	116 71	386 479	810 756	1,312 1,312	61.7 57.6
1969 上 下	71 75	508 514	728 723	1,312 1,312	55.5 55.1
1970 上 下	74 73	530 526	708 713	1,312 1,312	54.0 54.3
1971 上 下	73 73	524 518	715 721	1,312 1,312	54.5 55.0
1972 上 下	73 73	570 571	669 668	1,312 1,312	51.0 50.9
1973 上 下	73 73	569 556	670 683	1,312 1,312	51.1 52.1
1974 上 下	73 73	570 574	669 665	1,312 1,312	51.0 50.7
1975 上 下	71 66	592 602	649 644	1,312 1,312	49.5 49.1
1976 上 下	66 64	584 579	662 669	1,312 1,312	50.5 51.0
1977 上 下	63 61	580 560	669 691	1,312 1,312	51.0 52.7
1978 上 5月 下 9月	50 — —	456 431 424	591 666 673	1,097 1,097 1,097	53.9 60.7 61.3
				712	64.9

註: 1) 輸入品目的 分類는 1970年까지는 STTC「코드」4 자리에 근거했고, 그후에는 BTN(CCCN)「코드」4자리에 근거했다.

資料: 商工部.

이미 Ⅲ節에서前述한 바와 같이 韓國의 現行 產業誘因策은 지극히 복잡한 構造를 갖고

있다. 誘因策 중에는 投入物과 產出物의 價格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附加價值에 直接 혹은 間接的으로 影響을 미친으로써 補助的 性格을 띠는 것도 있다. 한 나라의 產業誘因體制를 分析·評價하는 데 있어서 물론 個別誘因策의 目的과 結果에 대한 分析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誘因策이 複合的으로 作用하여 產業間에 相對的으로 미치는 影響을 分析·評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時點에서 모든 產業이 동시에 正의 保護(protection)를 받거나 동시에 負의 保護(unprotection)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產業間의 保護構造는 相對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이와 같은 綜合的 保護構造를 파악하기 위한 一次的 段階로서 1978年度 現在 各 產業에 賦與된 名目保護率 및 實效保護率을 推定하여 이를 1968年度 推定值와 比較分析코자 한다.

名目保護率이란 國內生產者價格과 國際價格(border price)의 차이를 國際價格에 대한 百分率로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名目保護率은 自由貿易 條件下에서 존재할 國內價格에 비해서 諸誘因策들이 얼마나 影響을 미쳤는가 하는 程度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名目保護率은 國內生產者에 賦與된 實質的 保護度를 잘 나타내 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國內生產者에 대한 保護度는 그 生產製品 自體에 賦與

된 名目保護率뿐만 아니라 生產에 投入된 交易可能한 中間財에 대한 名目保護率에도 影響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實效保護率은 實質的인 生產活動에 대한 保護, 즉 附加價值에 賦與된 保護의 程度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며 國內價格基準에 의한 附加價值와 國際價格基準에 의한 附加價值의 차이를 國際價格基準에 의한 附加價值의 百分率로 표시한 것이다¹²⁾.

名目保護率을 推定하는 데 韓國에서는 法定關稅率이 좋은 指標가 끽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本研究를 위해서 1978年度 現在 交易可能한 總539個의 個別商品에 대한 國內·國際價格에 대한 直接比較를 시도하였다¹³⁾. 價格比較에서 國內價格으로는 稅前工場渡價格이 사용되었으며 國際價格은 그商品의 性格上 輸出 혹은 輸入商品으로 구분하여 f.o.b 輸出價格 혹은 c.i.f 輸入價格을 사용하였다¹⁴⁾. 玆의상 國內·國際價格의 차이를 國際價格에 대한 百分率로 표시한 것을 潛在關稅率이라고 定義하였다.

실제로 名目保護率 推定은 法定關稅率, 實績關稅率, 그리고 潛在關稅率의 세 가지 候補 가운데 하나를 選擇하는 方法을 사용하였는데 이때에 그商品의 輸出과 輸入의 相對的 重要性, 國內市場에서의 價格規制의 有無, 그商品에 賦課된 輸入規制 및 輸出規制 등과 같은 补充資料가 그 選擇根據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推定된 539個에 대한 名目保護率은 1975年度 韓國銀行의 產業聯關表 分類에 따라 318個商品群으로 合成되었으며, 이 名目保護率과 이를 이용하여 國際價格基準으로 換算된 1975年度 產業聯關表의 投入產出係數를 이용하여 318個部門에 대한 1978年度 實效保護率이 推定되었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이를 다시 11個

12) 傳統的 純粹貿易理論에서는 혼히 中間財에 대한 存在 및 貿易可能性을 無視함으로써 附加價值와 產生費가 동일하다는 假定을 사용한다.

13) 本價格調查는 本研究를 위해서 非公式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위한 產業銀行의 協助者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14) 本研究의 目的上 便利를 위하여 모든 商品은 그 輸出入 絶對量과, 輸出入量이 적을 때는 그 輸出入量의 相對的 增加率을 고려하여 潛在的 輸出 혹은 輸入商品으로 分類하였다.

大分類 產業群으로 加重平均한 것을 論議의 對象으로 삼고자 한다¹⁵⁾.

〈表 5〉는 11個 大分類 產業群에 대한 法定 關稅率, 名目保護率 및 實效保護率의 1978年 度 推定值를 1968年 推定值와 對比하여 提示하고 있다. 實效保護率은 Balassa와 Corden의 두가지 方法에 의해서 推定되었다¹⁶⁾.

〈表 5〉에서는 몇 가지 흥미있는 現象들을 觀察할 수 있다. 첫째, 1968~78年度 동안에 輸入自由化가 상당히 不振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全產業에 대한 加重平均 法定 關稅率이 1968~78年 期間에 54%에서 35%로 下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期間에 全產業의 加重平均 名目保護率은 거의 같은 水準인 14%에

〈表 5〉 產業群別 名目 및 實效 保護率

(단위 : %)

	名目保護率				實效保護率			
	法定 關稅率		名目保護率		Balassa		Corden	
	1968 ¹⁾	1978						
I. 農林水產業	36.5	25.7	17.0	49.5	18.5	63.4	17.9	60.7
II. 鎮業 및 에너지	12.2	4.0	8.9	-33.7	4.0	-26.4	3.5	-24.4
1次產業合計	35.1	22.5	16.5	37.0	17.8	51.6	17.1	49.1
III. 加工食品	61.5	37.5	2.9	39.6	-18.2	94.0	-14.2	43.2
IV. 飲料 및 煙草	140.7	139.3	2.2	24.3	-19.3	36.6	-15.5	29.4
V. 建設資材	32.2	26.3	3.9	-10.5	-11.5	-24.7	-8.8	-19.3
VI-A. 第I中間財	36.6	22.1	2.8	-1.8	-25.5	-33.0	-18.8	-24.7
VI-B. 第II中間財	58.7	31.9	21.0	-0.9	26.1	4.2	17.4	2.9
VII. 非耐久消費財	92.3	48.0	11.7	13.4	-10.5	32.3	-8.0	23.0
VIII. 耐久消費財	98.3	46.3	38.5	43.7	64.4	182.9	39.8	118.9
X. 輸送裝備	52.6	27.3	29.9	12.7	44.2	71.7	29.5	49.9
製造業合計	62.4	47.6	54.9	18.4	163.5	30.6	83.2	21.7
全產業	67.6	39.2	12.2	7.7	-1.4	14.8	-1.1	10.4
製造業(飲料 및 煙草除外)	54.3	35.3	14.0	14.5	10.5	30.4	9.0	24.1
全產業(飲料 및 煙草除外)	60.6	30.4	13.2	6.2	0.5	13.0	0.3	9.1
1次產業(加工食品包含)	49.6	28.4	14.6	13.9	11.7	30.1	10.0	23.9
全產業(飲料, 煙草 및 加工食品除外)	40.7	26.2	13.6	37.7	13.8	53.8	13.1	48.5
	60.4	29.5	15.5	2.2	5.9	9.3	4.1	6.6

資料: 1) Westphal and Kim(1977), *Industrial Policy Development*, Table 2.A and 2.B.

15) 올해(1980年)에 韓國銀行이 발표한 豊定인 1978年度 產業聯關表가入手되는 대로 318個 產業別 實效保護率은 再推定될 것임을 밝혀둔다. 名目保護率의 加重平均에는 1975年度 國際價格基準 國內販賣額이 加重值로 사용되었으며, 實效保護率의 경우는 國際價格基準附加價值를 加重值로 사용하였다. 名目 및 實效保護率의 推定上 자세한 技術上の問題點 및 基礎資料는 추후에 발표될 豊定이다.

16) Corden方法에서는 어떤 品目の 實效保護率을 推定하는 데 있어서 그當該品目的 生產에 投入된 非交易商品도 同一한 實效保護를 받는 것으로 假定하여 非交易 中間投入物의 附加價值를 當該產業의 附加價值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Balassa方法에서는 中間財로 投入된 非交易品은 이의 生產費와 同一한 價格에 의해서 供給되며 그 生產費는 그 非交易投入物의 生產에 사용된 投入物의 名目保護率의 變化에 의해서만 影響을 받는다고 假定하여 非交易 中間投入物의 實效保護率을 零으로 假定한다. 따라서 Balassa方法은 어떤 特定產業의 生產活動에 賦與된 誘因效果를 推定하고자 할 때 더 有用한 方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 Corden方法은 全體經濟에 미치는 經濟費用(economic cost)을 評價하기 위해서 實效保護率을 測定할 때 더 有用한 方法이라고 하겠다. 자세한 것은 Balassa(1971)와 Corden(1970) 참조.

더 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法定關稅率이 名目保護率을 複數 上廻하고 있다는 사실은 法定關稅率이 韓國에서는 實質的인 保護度를 잘反映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¹⁷⁾. 여하튼 韓國에서의 法定關稅率이나 名目保護率은 다른 開發途上國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水準이라고 할 수 있겠다¹⁸⁾.

둘째로, 韓國에서의 保護構造는 다른 開發途上國에 비해서 상당히 特異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保護構造가 製造業部門에 비하여 1次產業部門에 相對적으로 有利하게 偏倚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두 部門間의 保護隔差는 1968~78年期間에 크게擴大되어 왔다. 즉, 1968年度 1次產業과 製造業의 名目保護率은 각각 16.5%와 12.2%로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데 비해 1978년에는 1次產業은 37.0%로 上昇한 반면 製造業은 7.7%로 下落하여 두 部門間의 차이는 크게擴大된 것이다. 또한 두 部門間의 實效保護率의 隔差도 더욱擴大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세째로, 1978年度 名目 및 實效保護率構造를 보면 1968年度에 비해 產業間의 隔差가 월씬 더深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동안 誘因策의 폭이擴大되었을 뿐만 아니라 產業間에 상당히 差別的으로 適用되었다는 것을意味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1次產業內의 農水產業에 대한 名目保護率은 1968~78年期間에 17.0%에서 49.5%로 上昇한 반면, 같은期間에 鑛業 및 에너지產業에 대한 名目保護率은 8.9%에서 -33.7%로 下落한 것이다. 또

한 同期間에 資本財產業(建設資材, 第I中間財 및 第II中間財)의 名目保護率은 正에서 負로 轉換된 반면, 消費財產業(加工食品, 飲料 및 煙草, 耐久 및 非耐久消費財)에 대한 名目保護率은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上昇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1978年度 產業別 保護構造를 대략적으로 볼 때 만약 飲食料品產業을 제외한다면 低加工度產業으로부터 高加工度產業으로 옮겨 갈수록 保護率이 上昇趨勢를 보여준다. 즉, 名目 및 實效保護率은 素材 및 中間財產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다음에 資本財產業과 消費財產業의 順序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加工度에 따른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形態의 名目保護率構造는 1978年度의 產業別 實效保護率이 建築資材와 第I中間財產業을 除外한 모든 產業에서 名目保護率을 超過하고 있는 理由가 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가장 흥미있는 現象은 1968年度에는 負의 名目保護率을 나타낸 產業이 全無하였던 데 비해서 1978年度에는 4個 產業(鑛業 및 에너지, 建設資材, 第I中間財, 그리고 第II中間財)에서 名目保護率이 負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1978年度의 특이한 現象을 설명하는 데 다음과 같은 事項이 可能한 理由로 提示된다. 먼저, 539個 品目에 대한 國內·國際價格調查 結果에 의하면 多數의 品目에서 國際價格이 國내價格을 上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國내·國際價格의 차이를 國내·國際商品間의 品質의 차이에 基因한다는 假定下에 潛在關稅率을 零으로 취급하는 것이 通例라 하겠다. 그러나 韓國에서는 強度의 차이는 있으나相當數의 品目에 대한 公式 및 非公式的 價格統

17) 즉, 法定關稅率이 輸入禁止의거나 또는 減免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18) Balassa(1971, forthcoming)을 참조.

制가 오래 동안 施行되어 있음을 想起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78年度에는 韓國經濟가 강한 인플레이션 壓力下에 있었던時期였기 때문에價格統制가 廣範圍하게 適用되었으며, 실은 價格調查가 實施된 539個 品目의 約 1/3이 1978年에 價格規制對象品目이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韓國에서는 石炭, 鐵鋼, 肥料, 精油와 같은 에너지 및 基礎素材產業의 大部分이 國營企業에 속하고 있으며, 이들 產業의 生產品價格이 產業 및 기타 政策上 人爲的으로 낮게策定되거나 價格調整이 延遲되는 경우가 許多하다¹⁹⁾. 어떤 理由에서건 國內價格이 公式的으로 國際價格을 下迴하도록 規制된다는 사실은 國內生產品에 대한 超過需要를 언제든지充足시켜 줄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없는限不法의인 暗去來를 招來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소위 「프레미엄」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歸結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들 商品에 대한 規制價格이 「프레미엄」을 포함한 實際市場價格을 下迴하는만큼 本研究에서 推定한 潛在關稅率은 過小評價되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19) 다음에 提示된 資料는 1978年度 4個產業에서 觀測된 負의 名目保護率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政府의 價格規制가 얼마나 중요한役割을 하고 있는가를 端의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產業	1978년도 國內貿易額 (10億 원, 國際 價格基準)	比重(%)	名目保護 率(%) (1978年 度)
IV. 鐵業 및 에너지 無煙炭	276.0 203.0	73.7	-33.7 -51.2
V. 建設資材 시멘트	231.0 138.0	59.9	-10.5 -20.0
VI-A. 第I中間財 石油製品	2,284.0 861.0	37.7	-1.8 -2.6
VI-B. 第II中間財 壓延鋼	1,494.0 278.0	18.6	-0.9 -11.3

V. 結論과 要約

1960年代 初期 以後 韓國政府는 經濟開發에要求되는 產業 및 貿易構造의 轉換을 誘導하기 위하여 多樣한 產業誘因政策을 사용하여왔다. 이와 같은 個別 誘因策들은 最近까지製造業 및 輸出의 急伸張 등 所期의 目的을達成하는 데 크게 貢獻하여 왔다는 것을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最近의 產業誘因政策을 綜合的으로 볼 때 效率의in 資源配分을 沮害할 程度로 過度하게複雜多岐化되었다는 것도 否認하기 힘든 사실이라고 하겠다.

本研究의 主目的은 1960年代 以後 韓國에서 사용되어 온 產業誘因政策을 檢討하고 그 誘因策들의 效果를 計測·分析하는 데 두었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經濟活動에 대한 產業誘因政策의 綜合的인 分析·評價를 위한 1次의 段階로서 1978年度 現在 11個 大分類 產業別名目 및 實效保護率의 推定值를 提示하고 있으며 이를 1968年度 推定值와 對比分析하고 있다. 그 결과를 간단히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1964年度 換率現實化 以後 換率調整이 比較的 強力의으로 實現되어 왔으며 그 결과 輸入 및 輸出에 대한 實質實效換率은 적어도 1973年까지는 持續的인 上昇趨勢를 보여주고 있어 輸出 및 輸入代替產業의 國際競爭力を 提高시켜 준 것으로 推測된다. 그러나 1974年 以後 實質實效換率은 크게下落하여 1978年에는 거의 最低水準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最近의 輸出 및 輸入代替產業의 國際競爭力を 크게 弱化시킨 主要要因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둘째, 1968~78年 동안 우리나라의 輸入自由化는 상당히 不振하였던 것 같다. 法定關稅率과 輸入規制品目數는 모두 減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全產業에 대한 加重平均名目保護率은 거의 变화가 없었다.

세째, 韓國產業의 保護構造는 鎳工業에 비해서 農水產業部門에 有利하도록 偏倚되어 있으며, 특히 이 두 部門間의 隔差는 1968~78年 동안 極甚하게 擴大되었다.

네째, 1968~78年 동안의 產業別 名目 및 實效保護率構造의 推移를 보면 產業間의 隔差가 크게 擴大深化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產業誘因策들이 그동안 靜態的 意味에서의 產業別 資源配分의 效率性을 크게 低下시켜 왔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1978年度 現在 製造業의 名目保護

率構造는 基礎素材, 資本財, 그리고 消費財의 順으로 「에스컬레이션」趨勢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製造業의 實效保護率은 建設資材와 第I中間財 產業을 除外하고 모든 產業에서 名目保護率을 上廻하고 있으며, 製造業의 加重平均 實效保護率도 1968年的 -1.1%에서 1978年에는 10.4%로 크게 上昇되었다.

끝으로 1978年度 名目保護率 推定值에 의하면 11個 大分類 產業中 4個의 產業(鎳業 및 에너지, 建設資材, 第I中間財, 第II中間財)에서 負의 名目保護率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產業에 있어서 國內價格이 國際價格을 下廻한다는 사실은 1978年度에 이를 產業의 主要製品에 適用된 非現實的인 價格規制政策에 크게 基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을 이를 產業의 國內生產技術이 外國의 그것에 비해서 優越하다는 證據로 解析해서는 안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Balassa, B., ed.,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71.

_____, *Development Strategies in Semi-Industrial Countries*, World Bank, forthcoming.

Baldwin, R.E., "The Case Against Infant-Industry Tariff Prote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41, 1969, pp.295 ~305.

Bhagwati, J., *Foreign Trade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Anatomy and Consequences of Exchange Control Re-*

gim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Ballinger, 1978.

Bhagwati,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ercial Policy: Departure from Unified Exchange Ra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8.

Bhagwati, J. and A.O. Krueger, "Exchange Control, Liberalization Attempts, and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3, May 1973, pp. 419~427.

Bruno, M., "Development Policy and Dynamic Comparative Advantage," in R. Ver-

- non, ed., *The Technology Factor in International Trad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for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0.
- Chenery, H.B. and N.G. Carter, "Foreign Assistance and Development Performance, 1960-1970",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3, May 1973, pp.459~468.
- Corden, W.M., "The Efficiency Effects of Trade and Protection", in I.A. McDougall and R.H. Snape, *Studies in International Economics*, Amsterdam; North-Holland, 1970.
- _____, *The Theory of Protec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71.
- _____,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Protection", in P.B. Kenen, ed.,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pp. 51, 92.
- Diaz-Alejandro, C.F., "Trade Policie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B. Kenen, ed.,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pp.93~150.
- Frank, Charles R., K.S. Kim and L.E. Westphal, *Foreign Trade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South Korea*,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5.
- Hong, Wontack,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9.
- Johnson, H.G., "A New View of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in I.A. McDougal and R.H. Snape, eds., *Studies in International Economics*, Amsterdam; North-Holland, 1970.
- Krueger, A.O.,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4, March 1974.
- _____, *Foreign Trade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Liberalization Attempts and Consequenc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Ballinger Press, 1978.
- _____, *The Development Role of the Foreign Sector and Aid*, Studies in the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945-7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Little I., T. Scitovsky, and M. Scott, *Industry and Trade in Some Developing Countri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Magee, Stephen P., "The Welfare Effects of Restrictions on U.S. Trad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3, 1972, pp.645~707.
- Westphal, Larry E. and Kwang Suk Kim, "Industrial Policy and Development in Korea",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263, Washington, D.C.;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ugust 1977.